의안번호	2214347
의 뢰 인	강준현의원
회 답 일	2026.4.9.
추계번호	25D624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4억 8,100만원(연평균 26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립묘지별 경찰·소방공무원 안장 대상자(안 제5조제1항)	2,481	2,581	2,722	2,901	2,796	13,481	2,69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O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자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는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를 산출

❑ 본 추계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현황을 고려하여 성별은 남성, 평균 입직연령을 28세로 가정[1]하여 연령이 1세 늘어남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실제 안장을 신청하는 비율이 대상자의 직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데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장률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안장 대상자 전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 증가로 인한 안장단가는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안장단가를 적용함

○ 국가보훈부는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안장단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을 구별하지 않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2]

❑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7년부터 사망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계대상으로 하며,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1) 「2023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의 98.9%가 남성이고 신규 경찰·소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28.2세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7)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3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소방·경찰공무원의 안장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1) 신규 안장대상자 수

❑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을 하고 있는 기수급자와 향후 퇴직하는 신규 퇴직자로 구분하여 추계

○ 다만,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대상자 중 정년퇴직한 자는 현행법 상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추가되는 사람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대상자 중 정년퇴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

❑ 기수급자 중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재직기간 30년 이상이면서 정년퇴직 아닌 경우로, 추계기간 동안 3,908명으로 추정

○ 2024년말 기준 기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58세 이상 연령별 수급자 수에 통계청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24년 말 기준 기수급자 중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58세 이상의 기수급자 수에 연도별 남성 사망률(통계청 자료)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정년퇴직자 비율 51.5%[3]를 적용하여 현행법 상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제외하여 산정함

[표 2] 기수급자 중 국립호국원 추가안장대상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30년 이상(정년퇴직자 제외)	813	796	791	794	715	3,908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통계청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 수로 간주
2.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 중 정년퇴직자는 현행법상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 퇴직자 중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는 재직기간 30년 이상이면서 정년퇴직 아닌 경우로, 추계기간 214명으로 추정

○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 기준 신규 퇴직자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퇴

3)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자는 총 5,719명이고 이 중 정년퇴직자 2,947명으로 51.5%임

직자 중 통계청의 장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정년퇴직자 비율을 적용하여 제외

[표 3] 신규수급자 중 국립호국원 추가안장대상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30년 이상(정년퇴직자 제외)	21	31	42	54	65	214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신규 퇴직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통계청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수로 간주
2.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 중 정년퇴직자는 현행법상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를 합한 추가 안장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국립현충원 및 국립호국원 추가안장대상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수급자	813	796	791	794	715	3,908
신규수급자	21	31	42	54	65	214
합계	834	828	833	848	780	4,122

주: 1. 2024년 말 기준 연령별 기수급자 수(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공무원연금통계」)에 통계청의 장래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기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을 사망자수로 간주
2.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 중 정년퇴직자는 현행법상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안장단가

❑ 개정안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 단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안장비용: 2025년 안장비용 단가(140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4]을 적용하여 추정

4) 소비자물가상승률(2025.7.)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표 5] 1인당 안장비용: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유골함	봉안명패	합계
단가	90	50	140

주: 유골함은 봉안당 기준이며, 봉안명패는 부부 동시합장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묘지조성비: 2025년 기준 국립연천현충원의 묘지조성비 단가(2,572천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최근 10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상승률5)을 적용하여 추정

[표 6]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2025년 기준

· 사업위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일원
· 부지면적: 957,570㎡(29만평)
· 조성규모: 5만기 봉안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사업기간: 2019~2027년
· 총사업비: 128,607백만원(보상비 16,764백만원, 설계비 6,527백만원, 공사비 100,079백만원, 감리비 5,006백만원, 부대비 23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기간의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를 합한 국립묘지 안장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국립묘지 안장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안장비용	146	149	152	155	158
묘지조성비	2,830	2,969	3,114	3,267	3,427
합계	2,976	3,118	3,266	3,422	3,58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건설공사비지수(2025.9)

구분	2016.1	2020.1.	2021.1	2022.1.	2024.1.	2025.1.	연평균 증가율
건설공사비지수	85.27	104.07	119.77	127.1	129.77	131.03	4.9%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4억 8,100만원(연평균 26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장인원(명)	834	828	833	848	780	4,122	824
안장단가(천원)	2,976	3,118	3,266	3,422	3,585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481	2,581	2,722	2,901	2,796	13,481	2,69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따른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의 추가 안장대상자를 산출하고, 대상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100%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묘지조성비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